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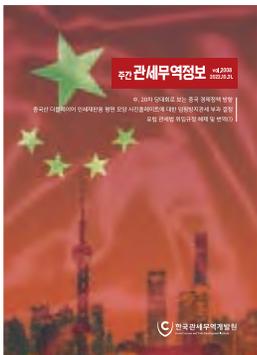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008
2022.10.31.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 경제정책 방향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재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 해제 및 번역(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유광수
총괄 이서혁 hjk1903@kctdi.or.kr
편집기획 정왕국 kingdom@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이승훈 lsh0910@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마케팅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기자단 고은지, 구여영, 김경인, 김단비
 노현정, 박세은, 이수현, 이승현
 이정민, 장준상, 정유미, 홍수민
 김민주, 문예슬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2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통권 제2008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7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정보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 경제정책 방향 4

Weekly News 6

Card News 14

Infographic News 16

최신개정법령

부령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9

고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
-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21

공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7

관세행정실무해설

관세평가실무해설

- 해외에서의 검증시험을 위해 지불한 테스트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29

해외 관세법

-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 해제 및 번역(1) 34

질의응답사례

- 자전거 부품 해외 직구 시 관세 관련 37

판례동향

관세판례해설

- 마스크용 부직포의 품목분류 쟁점 관련 조세심판 해설 · 40

조세심판결정례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1

품목분류동향

품목분류해설

- ‘아동용 캐리어’의 HS 품목분류 63

세번 바로잡기

- 앞치마 75

상식 밖의 상품학

- 캡사이신 77

중, 20차 당대회로 보는 중국 경제정책 방향

‘안보’와 ‘안전’ 중심 경제정책으로 불안감 심화 … 우리 기업 예의 주시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가 10월 22일 폐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 경제를 책임졌던 리커창 총리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상하이 당서기였던 리광 총리가 맡게 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23일 측근 일색인 3기 지도부 윤곽이 드러나자 경제 전문가가 없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경제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리커창 총리가 떠나게 되면 빈자리도 클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간 시진핑 주석은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행보를 펼쳐 온데다 18차 당 대회에서 최고 권력을 쥔 시 주석은 총리 영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 부총리를 활용해 리 총리를 철저히 견제했다. 상무위원도 아닌 류허 부총리가 리커창 총리를 제치고 ‘중국 경제의 황제’로 불린 점은 의미가 작지 않았다.

천 강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리커창 총리는 최근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없는 총리 중 한 명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언급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 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총리가 된다면, 시 주석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 주석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 장기집권에 들어가게 된 시 주석의 중국은 최근 미국과 경제·안보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등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좋지 않은 경제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을 피하려 연기했던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3.9%를 기록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 24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올해 3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5.5% 안팎이라고 발표했지만 목표 달성은 이미 떨어진 상태다.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와 발맞춰 5%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로서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우며 미·중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연기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시 주석의 당대회 개막식 연설은 ‘안보’와 ‘안전’이라는 단어가 경제의 전면으로 내세워져 대만과

갈등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지만 업무보고서 원본에는 ‘국지전 승리’를 콕 집어 언급했으며, ‘안보’ 또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89번이나 등장해 5년전 19차 당대회때 보다 크게 늘어났다. ‘투쟁’이라는 용어는 17번 사용했고 위협이라는 단어도 처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 줄곧 고속성장이 공산당의 집권 명분이었다면 이제는 안전 보장으로 무게추를 옮겨 놓은 모양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세계경제는 더욱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에서 제시한 중국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 5개 중 안전과 안보가 향후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은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TRA에서 발표한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업무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새로운 안전·안보체계로 新발전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新발전체계는 ▲고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현대화 산업체계(교통·제조업·인터넷·품질·항공우주·디지털 강국), ▲농촌진흥, ▲지역협동발전, ▲고수준 대외개방을 포함한 중국경제발전체계를 의미한다. 향후 중국이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산업 정책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안전(안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방국가들이 對中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을 배제한 新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易세계화로 각국의 산업망·공급망 배치가 ‘효율 최우선’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제안보, 안전한 공급망·산업망 구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량안보’, ‘안전한 자주형 공급망 구축’, ‘기술자립’ 등 이번 업무 보고서에서 언급한 분야의 안보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 주석이 “새로운 자원배치체계(舉國體制)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기업과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학연 심층 융합의 기술혁신 체계’라는 표현과 큰 차이를 보인다.

KOTRA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자국 우선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고수준 발전’ 정책과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 산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국 사업 전략을 수립,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기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50대로 확대하고 중점 지원키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이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 경쟁력위)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 소부장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美·中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에 따라 ▲對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對日 의존도가 역대 최소(2022.上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했으나, 소재부품장비 對中 의존도는 지속 증가(2012년 24.9%

→ 2022.上 29.6%)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났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했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해 올해 소부장 R&D 신규예산 중 新산업 비중 예산을 9.3%인 99억원에서 14.7% 증가한 242억원(24.0%)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대응력 부재에 따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단일기업 또는 복수 기업 간 핵심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

선풐,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 공급망 안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 사업을 넘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 범위 확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 지원까지 자동 연계하는 식으로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한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재편 필요성 제기에 따라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63개 신규기술을 추가한 150개 핵심전략기술 후보군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차, 기초과학, 바이오 부문의 핵심전략기술 품목 확대가 포함된 150개 핵심전략기술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산업부를 통해 고시했다.

수요·공급기업, 대학·연구기관·규제기관 등 관련 이해 관계자 간 공동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연대·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인 소부장 협력모델은 올해

시행 3년차로, 산업부 및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본격 창출 중이며 그 성과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경쟁력위에서는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을 신규 승인했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총 4건으로,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대응 등 국가적 과제 관련 분야에서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윈스톱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총 5건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과 소부장 산업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발굴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CEPA 활용 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국내·외 전문가 초청해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FTA를 활용한 우리 수출입 기업의 해외 무역 촉진을 위한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對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2011년부터 국제 원산지와 관련해 매년 FTA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하는 세미나로 올해는 인구 약 14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자,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상품교역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 인도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CEPA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인도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인도 세관의 원산지 관리강화 지침, CEPA 특혜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등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2부에서는 ‘인도의 무역 환경과 통관 전략’을 주제로 인도 주재 관세관 등 전문가 토론에 이어, 서울대학교 강성용 교수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

제발전 전략 사이에 선 인도 사회’에 대한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EODES) 구축 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의 원산지·통관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CEPA의 특혜를 최대한 활용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계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10월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참여 신청 및 사전 질의를 받는다.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세미나 자료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송부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세미나 현장 녹화영상은 11월 16일부터 관세청 유튜브 망을 통해 공개해 세미나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태국, 한국産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51.53% 반덤핑관세 부과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 → 46개로 반덤핑관세 적용 품목 증가

태국정부는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해오던 한국·중국·대만·베트남産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을 동결하고, 이를 5년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존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였던 과세대상 품목이 46개로 추가됐다.

KOTRA에 따르면,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위원회는 기존 반덤핑관세율을 유지함에 따라 한국 세아제강(11.96%)을 제외한 모든 한국産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 51.53%를 부과하며, 중국 145.31%, 대만 2.38~29.04%, 베트남은 310.74%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6년 첫 반덤핑관세 적용 품목 발표 당시 HS Code 8자리 기준 9개, 11자리 기준 14개에서 2022년 개정 후 각각 10개, 46개로 증가했으며, HS Code 8자리 기준 제7306.40.10호(보일러관)는 목록에서 삭제됐으나 제7306.40.19호와 제7306.61.90호가 새롭게 추가됐다. 세계철강협회에서 발간한 올해 세계 철강동향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에서 규모상 총 수입 1,570만톤과 순수입 1,370만톤으로 각각 7위와 3위를 기록했고, 이중 지난해 한국의 태국 수출량은 795만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월 기준 태국 산업표준원에서 지정한 전체 필수 인증 품목 129개 중 철강 제품 관련 필수 인증은 22개이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개가 추가됐다.

KOTRA는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이 판매할 수 없으므로 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 전 반드시 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수 인증 품목 리스트는 태국 산업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증빙을 갖춰 항소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며, ▲태국 산업단지공단법에 따라 수출용으로 해당 제품을 상품생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태국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한 후 수출하는 산업 및 상업 운영자, ▲태국 투자촉진법에 따라 수출을 위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태국으로 수입한 투자촉진 허가를 받은 사업자, ▲태국 관세법에 따라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반덤핑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반덤핑관세율 및 관세 부과 대상 ●

국가	대상 기업	CIF 기준 반덤핑관세율(%)	국가	대상 기업	CIF 기준 반덤핑관세율(%)
한국	SeAH Steel Corporation	11.96	대만	Froch Enterrise Co.,LTD	12.29
	해당 품목 제조기업	51.53		YCInox Co.,LTD	2.38
중국	해당 품목 제조기업	145.31		해당 품목 제조기업	29.04
			베트남	Sonha International Corporation	310.74
			해당 품목 제조기업		

美 IRA로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 열린다

산업부·KOTRA·무역협회,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공동 주관

KOTRA는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무역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미국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관심기업 60여개 社가 참가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기차 세액공제 등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IRA 법안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취지 하에 다양한 투자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조수정 통상정책총괄과장은 “IRA 법은 향후 10년간 총 7,370억 달러의 세입을 확보해 이 중 친환경 에너지와 헬스케어 등에 4,37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투자된 금액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로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정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활용 기회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 허난이 연구위원은 “청정 에너지 분야가 특히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혜대상 품목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중복 적용이나 누적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이고, 세액공제와 더불어 일반 보조금이나 대출·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조은교 부연구위원의 IRA 산업별 영향분석, IRA 부문별 세부 분석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의 순서로 이뤄졌다.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IRA를 통해 첨단 공급망이 확보된 미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면 제조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태양광 분야에서는 중국 대비 기술경쟁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모듈 및 소재 등에서 시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서 IRA 부문별 세부영향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전망과 기회요인을 설명했다.

| 정유미 기자 |

美 냉동공조설비 인증, 이제 한국에서 받는다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으로 한국에서 인증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광역시,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함께 추진해 온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이 10월 18일 개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냉동공조 제품을 수출하려면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냉동공조협회(AHRI)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국내에 미국 인증을 수행할만한 시험소를 개설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인천시,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함께 2020년부터 200억원을 투자해 시험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왔고, 이와 동시에 동 시험연구원이 美 AHRI 한국시험소로 인정받도록 하는 협의를 그간 진행해왔다.

이번에 개원하는 시험연구원은 기존 국내에서 시험하기 곤란했던 중대형 건물용(공항, 지하

철, 전시장 등) 대형 공조설비와 외기전담공조시스템(DOAS)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최신 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美 냉동공조협회 간에 해당 시험연구원을 AHRI 한국시험소(공기조화기 분야)로 인정하는 협약 체결도 진행했다.

우리 업계가 그동안 해외 시험소에서 인증하는데 평균 6개월, 매년 300여억원이 소요됐으나, 국내 시험인증 수행으로 인해 시험인증 기간을 약 2주로 단축하고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은 “우리 냉동공조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식 어류 433건 수입통관 검사, 4건 부적합·전량조치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로 안전성 강화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된 양식용 어류 433건에 대해 7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료첨가제인 에톡시퀸 성분을 검사한 결과 4건을 부적합 처분하고 통관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에 신설된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건, 냉동부세 1건, 활미꾸라지 1건 등 4건으로 전량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에서 참고하면 된다.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

산업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선박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전략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특히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주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확대해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기술 주력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과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고자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船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적기 발급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공급도모 및 기업간 상생을 통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선박시장의 환경변화 역시 우리 조선산업에는 기회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수현 기자 |

과기부, '한국 신기술 융합 콘텐츠 홍보관' 운영

국내 28개社 참가 … 초고화질 콘텐츠 해외 배급 계약 2건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ICT 융합, 초고화질 등 국내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9일까지 밍콰(MIPCOM)에서 '한국 신기술 융합 콘텐츠 홍보관'을 열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참고로 밍콰는 매년 10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국제 콘텐츠마켓이다.

과기부는 최근 가상융합,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적용한 미디어 콘텐츠 확산에 대응해 올해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활용 개선 등 제작환경 개선 실증 지원을 신설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관도 새롭게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28개 방송·제작사의 총 41개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가 참가해 버추얼 휴먼, 인공지능 등 ICT 융합 콘텐츠와 초고화질 콘텐츠를 선보였다.

수출상담회 기간 중 총 101건, 약 119억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구매 상담이 이뤄졌으며 해외 방송·제작 관계자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제작 기술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ICT 융합 콘텐츠는 ▲버추얼 휴먼과 연예인이

메타버스 토크쇼와 XR콘서트를 진행하는 '메타버스 전성시대 K-POP의 미래, WE LIVE',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검색 프로그램 등 총 10건을 홍보했다.

또한 초고화질 콘텐츠로는 ▲K팝 안무가들의 8K 다큐멘터리 '다큐 춤, 나는 왜 춤을 추는가?', ▲8K 판타지 드라마 '몽중지애', ▲8K 다큐멘터리 '히든 어스-한반도 30억년' 등 총 31건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과기부가 제작 지원한 초고화질 다큐멘터리 2편에 대한 해외 배급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둬 유럽 주요 방송사에 국내 우수 초고화질 콘텐츠를 소개하고 다양한 국내 콘텐츠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판로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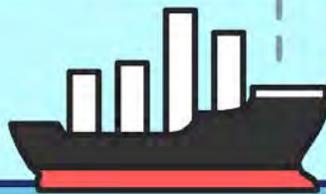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초고화질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다양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사례에 대한 해외 제작업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 ICT 융합 제작 기술 확산, ICT 기업과 미디어 기업 간 기술 교류·협력 등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를 육성하고 글로벌 新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현정 기자 |

Card News

KCTDI 온라인기자단
홍수민 기자 제작

KCTDI 온라인기자단 홍수민 기자

관세무역 시사용어



부메랑현상 (boomerang effect)

선진국의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선진국의 산업과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뒤 서유럽의 자본투자와 기술 원조를 받은 일본이 공업부문의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서유럽 각국에 역수출하여 위협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Card News



기펜의역설 (giffen's paradox)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그 재화보다 우등한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다.
수요법칙의 예외로 어떤 재화의 가격 변동과 수요가 정비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경련

에코스패즘 (eco spasm)

경제(economy)와 경련(spasm)의 합성어로, '발작적 경제위기'를 말한다.
고도성장, 공업국가 중심의 세계가 전쟁 등이 원인이 돼 연쇄반응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유럽을 거쳐 아시아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Infographic News

2022년 9월 수출입 현황(확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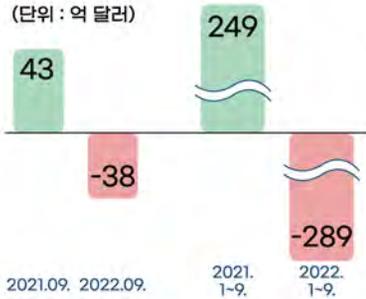
수출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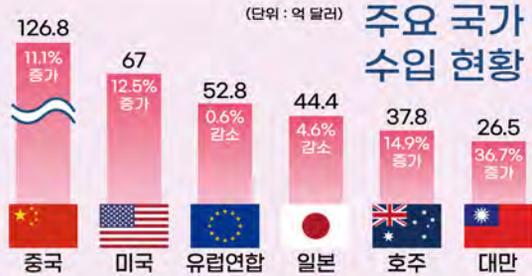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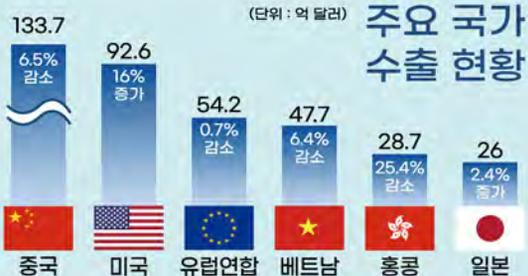


무역수지



수출, 2.7% 증가한 574억 달러 ... 역대 9월 중 1위

23개월 연속 증가, 19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로 6개월 연속 적자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임.

※ 본 자료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지 편집실에서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주요품목은 관세청 성질별 분류체계 기준으로 집계되며,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 (2023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주간 관세무역정보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08호_2022.10.31.

최신개정법령

본 내용은 www.custra.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령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고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공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法

부 령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2022.10.25.)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및 재생판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mm)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러차이(Jiangsu Lecai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10
	2. 코닥[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0
	가. 코닥 인베스트먼트[Kodak (China) Investment Co., Ltd.]	
	나. 코닥 코리아(Kodak Korea Ltd.)	
다.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Company)		
	라. 화광(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마. 화광 난양(Lucky Huaguang Nanyang Trading Co., Ltd.)	3.60
	바. 화광 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	
	사.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	
	아. 아그파 화광(Agfa Huaguang (Shanghai) Printing Equipment Co., Ltd.)	
	자. 화푸(Henan Huafu Packaging Technology Co., Ltd.)	7.61
	차. 코닥 일렉트로닉[Kodak Electronic Products (Shanghai) Company Limited]	
	3. 화평(Chongqing Huafeng Dijet Printing Material Co., Ltd.)과 그 관계사인 화평PM(Chongqing Huafeng Printing Material Co., Ltd.)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61
	4. 그 밖의 공급자	4.87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4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고 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204호, 2022.10.22.)

◇ 개정 사유 ◇

□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

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와 관련 화합물이 추가되어 모든 당사국에 '22.10.22.부터 발효

◇ 주요 개정 내용 ◇

□ 가. 로테르담협약 대상 물질목록(별표1) 정비
- 신규 등재된 산업용 화학물질인 Deca-BDE 및 PFOA(관련 물질 포함 252종) 추가 및 화학물질 오기 정정 등 물질목록 현행화

나. 협약의 명칭을 '로테르담협약'으로 구체화하는 등 문구 수정

본문 : 생략

※ 별표 : www.custracom.com 참조

■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4호, 2022.10.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2022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 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 (기준) 2022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 고시되는 2021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2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유형/차종	톤급	1톤	3톤	5톤	8톤	10톤	12톤	15톤	20톤	20톤
		이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일반형		30.7	42.9	55.1	58.1	61.2	64.3	73.3	82.9	92.5
덤프형		24.8	32.5	40.2	47.8	55.5	63.1	70.8	78.4	86.1
밴형		40.9	53.4	65.9	78.4	89.5	92.3	95.1	97.9	100.7
특수용도형	냉장·냉동차	49.1	65.7	71.2	76.7	85.3	94.0	102.6	111.2	119.8

유형/차종	등급	1톤	3톤	5톤	8톤	10톤	12톤	15톤	20톤	20톤
	이하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특수 응용 도형	곡물, 사료운반	60.8	69.4	77.9	86.4	95.0	102.7	110.3	118.0	134.8
	유조차	34.4	41.2	48.1	54.9	65.9	76.9	88.0	99.0	110.0
	탱크로리	52.2	64.3	71.2	78.1	83.6	94.5	105.5	105.5	127.3
	기타	38.4	58.5	66.1	73.8	81.4	94.3	107.1	119.9	132.7

유형/차종	등급	1톤	3톤	5톤	8톤	10톤	12톤	15톤	20톤	20톤
	이하	미만	미만	이상						
특수 자동차	견인형	42.7	54.1	65.5	76.9	88.3	99.7	111.1	122.5	133.9

본문 : 생략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공 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14, 2022.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894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물류단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신설)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이의 신청 기한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한을 부과한날부터 6개월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dmsdud07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7, 2022.10.1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6, 2022.10.1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소득세법」 제156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oojw9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우편 : woojw94@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2,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02, 2022.10.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우편 : ojm0711@molit.go.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03, 2022.10.25.)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일씨앤피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4일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4월 26일 이를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 2021-7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2년 4월 14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년 4월 28일 제출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0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940호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 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 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해외에서의 검증시험을 위해 지불한 테스트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이 병 용 | Lee & Members 합동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호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해외 기관에서 검증시험을 위해 지불한 테스트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¹⁾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때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제1조에 대한 주해는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의미하며, 협정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Activities undertaken by the buyers on his own account)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참조

2. 구매자가 해외에서의 검증시험을 위해 지불한 테스트 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거래 내용]

- 국내의 B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밸브 납품 수주를 받고 납품조건인 미국기계기술자협회 밸브 검증시험(ASME QME-1)에 따른 인증서를 받기 위해 시험용 밸브를 제작(일본産 모터 결합)해 미국으로 수출함.
- 시험용 밸브는 시험검사 후 인증서를 받기 위한 pilot valve로 시험검사 후 밸브는 판매용으로 가치가 없으며, 단지 회사의 홍보용 견본으로 내방객 전시용 및 해외 Road show용 전시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함.
- 수출물품은 계약 물품 총 11대 중 1차로 수출한 6대이며, 1차 테스트 결과 일부 밸브에서 가동이 정지하는 결함이 발생해 용량이 큰 모터용 구동기(모터, 기어 세트 등)를 일본에서 구입해 이를 직접 미국으로 운송해 교체(미국 현지의 B사 직원이 수행)하고 재검사하는데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
- 애초 수출한 6대 중 검사가 끝난 5대를 우선 수입하면서 미화 53만 8,671달러와 미화 7만 5,835달러를 각각 Original Testing Fee와 추가적인 Testing Fee로 지급함.

[질의 내용]

- 국내의 B사가 부담한 Original Testing Fee와 추가 지급한 Testing Fee를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과세가격 결정 및 이유]

- 본 건은 해외 시험·검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및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과세가격 원칙상 협정 제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입물품의 개발·제조 등

물품 본질과 관련된 시험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시험에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Original Testing Fee의 경우, 구매자가 국내 납품을 위해 자신이 제작한 시험용 밸브(Pilot valve)에 대해 미국기계기술자협회 밸브검증시험(ASME QME-1)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 지급한 Testing Fee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Testing Fee도 모터 등의 교체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교체 후 수행된 추가 비용에 따른 용역이라는 점과 협정 제8조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해설】 위 사례는 국내 납품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시험·검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해외에서의 검증 시험을 위한 테스트 비용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포함되는지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질의회신 사례다.²⁾

위 사례에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과 실제지급금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세법령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하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辨濟)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제8조에 따라 조정한 가격임을 규정하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의미하며, 협정 제8조

2)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사례(2006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

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구매자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수입국 Y의 수입자 I가 수출국 X의 판매자 S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해당 기계가 판매 계약의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X국의 전문가 T에게 검사를 맡기고 검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는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며 제8조에 규정된 조정 중의 하나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³⁾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은 판매자(판매자의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 등의 제3자를 포함한다)가 자기를 위해 행한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구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구매자가(구매자의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 등의 제3자를 포함한다)가 자기를 위해 행한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위 사례는 해외 시험·검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해외 시험을 위해 지급한 테스트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요지다.

이에 대해 관세평가협의회는 과세가격 원칙상 협정 제1조 제1항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시험에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WTO 관세평가협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에 따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례에서 국내의 B社가 해외 기관에 지불한 Original Testing Fee와 추가 지급한 Testing Fee는 구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시험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정 제8조에 규정한 조정요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WTO 관세평가협정」 COMMENTARY 16.1(Activities undertaken by the buyer on his own account after purchase of the goods but before importation) Paragraph 3 참조

4)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2의3(수입물품과 관련된 검사비용의 취급) 참조

이와 같이 검사비용이 구매자 자신을 위한 행한 비용으로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매자가 자기를 위해 행한 검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이거나 제조 공정의 일부로 구매자가 행하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인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6.1에서도 기계를 구입한 후 해당 기계가 판매 계약의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급한 검사비용 과세 여부 판단과 관련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검사는 제조 공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 검사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검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조건이 아닌 상황에서의 거래상황을 예시하고 있고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또한 검사가 제조 과정의 일부로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하는 자와 관련된 비용은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POINT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 법적 가산요소를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을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취득비용에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이 수입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 해제 및 번역(1)

황 남 석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앞서 연재했던 유럽 관세법 번역(통권 제1830호~제1930호)에 이어 유럽 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한 유럽 관세법 위임규정을 번역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관세법의 특정 규정에 관한 세부적 규칙에 관해 2013.10.9.자 유럽연합 관세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유럽연합 규정 No 952/2013¹⁾[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을 보완하기 위한 2015년 7월 28일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15/2446 of 28
July 20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특히 제290조와 관련해

2013.10.9.자 유럽연합 관세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유럽연합 규정 No 952/2013, 특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제31조, 제36조, 제40조, 제62조, 제65조, 제75조, 제88조, 제99조,
제106조, 제115조, 제122조, 제126조, 제131조, 제142조, 제151조, 제156조, 제160조, 제164조,
제168조, 제175조, 제180조, 제183조, 제186조, 제196조, 제206조, 제212조, 제216조, 제221조,
제224조, 제231조, 제235조, 제253조, 제265조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 규정을 채택한다.

(1)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No 952/2013(유럽 관세법)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협정
(TFEU)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유럽 관세법의 특정한 비본질적 요소를 같은 조약 제290조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관세법의 명확하고
적용한 적용을 위해 리스본 조약 이후의 맥락에 따라 새로운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1) OJ L 269, 10.10.2013, p.1.

(2) 위원회는 준비 작업 중에 전문가 수준 및 본 규정의 초안에 적극적으로 일조한 관련 이해당사자와 함께 적절한 협의를 수행했다.

(3) 유럽 관세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결정 70/2008/EC²⁾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용을 장려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용은 무역을 촉진하고 세관 통제의 효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업비용과 사회에 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세관당국 간, 경제 활동 주체와 세관당국 간의 모든 정보 교환 및 전자 데이터 처리 기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정보의 저장에는 세관 정보의 저장 및 처리를 다루는 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격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 합의해 전자적 시스템의 범위와 목적을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세관절차나 통관절차와 관련된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는 전자적 세관 시스템에 통합된 서비스의 형태로서 유럽연합의 조화된 인터페이스가 직접 및 유럽연합 조화적인 무역 접근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정의된 시스템의 경우에도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4) 전자적 시스템에 기초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EC No 2454/93³⁾에 규정된 절차와 이미 수입, 수출 및 경유에 관해 적용되는 절차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의 계속적 적용이 담보되어야 한다.

(5)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그 사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적용될 각 영역에 관한 공통 데이터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공통 데이터 요건은 시행 중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데이터 보호 조항에 따라야 한다.

(6) 우편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통신 및 우편 위탁 물품의 통관을 위한 통일된 틀이 채택되어야 한다.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무역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만국우편연합 규정에 따라 우편 사업자의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 의무를 충분히 고려한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우편물품 통관신고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2) Decision No 70/200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on a paperless environment for customs and trade(OJ L 23, 26.1.2008, p. 21).

3) Commission Regulation(EEC) No 2454/93 of 2 July 1993, laying dow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OJ L 253, .11.10.1993, p. 1).

(7) 경제 활동 주체와 세관 당국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 위험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다음 상황을 포함한다.

- 관세채무의 통지, 수입관세 면제 조건을 확정하는 정보의 교환, 신고자가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 이외의 수단을 사용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한 수단을 사용한 세관 당국의 통지
- 경우에 수반되는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경유하기 위한 마스터 참조 번호(MRN) 제시, 소급 수출 신고를 제출하고 출국 세관에 물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물품이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을 벗어났다는 증거, 구속력 있는 원산지 정보와 관련된 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및 저장

(8)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의 사용이 경제 활동 주체의 과도한 노력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의 완화를 위해 물품의 가액이 통계적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 특히 제한된 가격의 상업적 배송의 대상인 유럽연합 물품의 세관상 지위 입증 또는 상품에 관한 전문가의 구두 신고가 허용돼야 한다.

경제 활동 주체가 아닌 여행자가 유럽연합 물품의 세관상 지위 입증 또는 일정 길이까지의 어선에 관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절차가 서류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정하는 국제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로 인해 전자 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

(9) 경제 활동 주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 활동 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된 데이터 세트로 한 번만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제 활동 주체 이외의 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않은 경제 활동 주체의 등록은 경제 활동 주체에 대한 명확한 식별을 위해 EORI(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하는 전자 시스템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허용한다. 데이터를 필요한 시간보다 오래 저장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EORI 번호의 실효에 관한 규칙이 선행돼야 한다.

(10) 관세법령의 적용과 관련된 결정을 신청하는 자(신청인)가 청문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신청인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세관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세관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물품의 통제 결과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여야 한다.

(11) 관세당국 업무의 실효성과 청문권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청문권에 관해 일정한 면제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자전거 부품 해외 직구 시 관세 관련

중국 쇼핑몰에서 자전거 바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원래 상품가격은 미화 188달러이지만, 할인된 가격인 미화 120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세 부과 기준이 188달러인지 120달러인지 궁금합니다.

A 판매 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애초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할인금액으로 판매한다면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수입

사전세액심사 건의 수입신고 절차

사전세액심사 건의 수입신고 시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기 전에 신고한 세액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제1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 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또한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및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관세법」 제252조(수입 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기준가격은 이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말하며, 현재 한 달에 두 차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담보기준가격, 국내도매가격조회 등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사전세액심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물품 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은행확인서
2. 계약서(또는 약정서, 구매서, 구매위탁서 등)
3. 오퍼 또는 견적서, Price list, Inquiry)
4. 구매품의서 등 내부통제 자료
5. 운임, 보험 관련 서류 사본
6. 신용장, D/A 계약서 사본 등 결제 관련 서류
7. 해당 물품 거래 관계가 제기된 장부의 해당 부분 사본
8.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가산요소(수수료, 포장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및 무역 외 지급인증

수입요건

금속충전기의 수입요건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금속충전기의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A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급속충전기를 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 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2.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전력변환장치는 1,5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전기차충전기
(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력변환장치
(정격용량이 1MW 이하인 것에 한함)

■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 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충전기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통관

파이프용 담배 해외 직구 시
관세 면제 여부

미국에서 파이프용 담배 및 시가를 구매했는데, 면세 통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파이프 담배는 기타 담배로, 시가는 엽결련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담배의 면세통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통관 범위여도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

- 켈련 : 200개비
- 엽결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켈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10g
- 기타 담배 : 250g

마스크용 부직포의 품목분류 쟁점 관련 조세심판 해설

이 정 완 |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I.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1.부터 2020.9.15.까지 중국에 소재한 ○○○ 등으로부터 부직포(Melt Blown¹⁾,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호 등 ○○○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5603.12-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3.2%(적용된 부직포)로 신고했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나. 처분청은 2021.12.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5603.12-9000호(기본세율 8%, 기타의 부직포)에 해당한다고 봐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른 부속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했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지 않자 2022.4.8.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했다.

다. 청구인은 2022.4.28. 조세심판원에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6.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II.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폴리프로필렌 수지 원자재를 적층해 만든 부직포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미세섬유가 집합된 시트 형태로 여과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특성을 제어하기 간편하고 기공률이 높기 때문에 실내 및 환경 정화용 필터, 수처리 필터, 각종 여과재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직접 방사형 부직포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기존의 부직포 제조공정과 달리 별도의 섬유화 공정을 거치지 않고 용융고분자가 토출됨과 동시에 고온/고압의 기류에 의해 섬유화 및 섬유 간 결합이 이뤄지는 특징을 지닌다.

(출처 : 열가소성 고분자를 활용한 Melt Blown Nonwoven의 에어필터 응용기술, 양병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기술센터 선임연구원)

가.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방직용 섬유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율표에서 부직포가 ‘침투·도포·피복·적층’에 해당하면 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56류의 주나 제560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층’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적층’의 사전적 의미는 방직용 섬유에 층층이 쌓임이고, ‘침투’는 방직용 섬유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게 해서 베이는 것이고, ‘도포’는 방직용 섬유에 도료 따위로 걸면을 바르는 것이고, ‘피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움을 말한다.

따라서 방직용 섬유에 다른 물질을 스며들게 하거나 걸면에 바름 또는 덮어씌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층’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를 이종이나 다중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적층’이라 한다.

나. 적층의 의미는 제4412호 적층 목재의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관세율표 제4412호에서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고 있고, 제441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적층 목재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합판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뭇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돼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뤄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

○ 베니어패널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이다. 목재 이외의 재료(예 : 플라스틱 제의 패널)로 된 기부에 부착된 베니어판은 주요 특성이 베니어인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

○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블록보드·라민보드 및 배튼보드 (심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윗가지 또는 배튼이 접착제로 접합돼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 또는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 패널(목재의 심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 또는 코르크와 같은 기타 재료층으로 대체돼 있다)

위와 같이 목재류를 이종이나 다중으로 겹합시키는 제조방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목재에 액체 따위를 스며들어 베이게 했거나, 도료 따위를 걸면에 발랐거나 목재에 다른 물질을 덮어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도포·피복한 목재’라고 표현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수지 원자재를 적층한 스펀본드 부직포다.

쟁점물품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라 한다) 수지 알갱이를 흡입기를 통해 압출기로 보내 가열 용해 후 압출해 나온 원자재를 필터링을 거쳐 계량 펌프로 보내 중량에 따라 계량을 하고 방적탱크를 지나 분사판에 분사시키면서 적층이 이뤄지며, 냉각 후 인장기 그물에 깔아 형태를 만든 후 열압기로 pp 부직포 적합품이 생산된다.

쟁점물품의 규격은 ‘SS non-woven fabric(MELT BROWN)’인데, ‘SS’에서 ‘S’의 의미는 스펀본드(spunbond²⁾)를 의미하고 ‘SS’는 이를 2층으로 적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사실관계

1. 쟁점물품은 pp 수지를 원료로 압출·방사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조필라멘트 섬유로 웹 형성, 웹 냉각, 웹 결합 과정을 거쳐 제조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g 내지 50g이고 KF 보건용 마스크에서 필터(Melt Blown filter)로 사용됐다.

2.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다음과 같이 ① 기타의 부직포 또는, ② 적층한 부직포로 품목분류했다.

결정 세번 (결정일자)	물품 설명
① 제5603.12-9000호 (2021.1.29.)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원단을 롤상으로 감은 물품 - 1제곱미터당 중량 : 31.48g/m ² - 용도 : 마스크 제조용
② 제5603.12-1000호 (2019.7.18.)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로 만든 부직포 일면에 금속 증착된 PET 필름을 적층해 롤상으로 감은 물품 - 1제곱미터당 중량 : 37g/m ² - 용도 : 과수용 반사필름

2) 스펀본드란 방사(spun)된 장섬유를 연속적으로 결합(bond)해 부직포를 만든다는 의미이며, 제조법은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의 듀폰사와 독일의 프루덴베르그社에 의해 최초로 개발돼 소개됐다. 스펀본드법은 원료인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고온에서 녹여 필라멘트 형태로 방사, 고화시켜 연속 이동하는 네트컨베이어상에 균일분포 및 집적시켜서 제조하는 일관 플로세스로서,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원료수지에서 최종 제품을 한 공정에서 직접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장섬유 spunbond 부직포 필터 제조기술, 이민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중앙기술원 책임연구원)

IV. 조세심판 결정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쟁점물품은 적층하지 않은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돼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웹형성 단계에서 여러 겹을 겹쳐서 제조돼 적층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 5603.12-1000호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5603호의 해설서에서 부직포의 제조과정은 크게 ① 웹형성, ② 접착, ③ 완성가공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③ 완성가공 부분을 살펴보면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도 포함한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은 웹형성과 접착의 공정을 거친 완성가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해설서에서 ①·②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섬유사들의 배열에 대해서는 ‘적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물품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 또는 적층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쟁점물품을 HSK 제5603.12-1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V. 사건 해설

1. 관세율표 제5603호의 품목분류 체계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 중 최우선 분류 규정인 제1호에 따라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부·류의 주에 의해 결정되며, 소호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6호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전제로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협약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품목을 세분한 HSK를 고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상관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직포에 대해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직포란 방직용 섬유를 제직 등의 방법이 아닌 배열해 형성한 여러 겹의 웹을 접착해 만든 것을 의미하고 쟁점물품이 이러한 부직포에 해당한다는 점, 이에 따라 통칙 제1호를 적용해 제5603호로 분류된다는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제5603호의 HSK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다음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5603호의 소호는 1차 재질(인조필라멘트/인조스테이플 등), 2차 중량(1제곱미터당 25g/75g/150g), 3차 침투·도포·피복·적층 가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호의 품목번호별로 한·중 FTA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중 적용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품목번호는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중량 25g/m² 초과 150g/m² 이하의 부직포가 분류되는 제5603.12호와 제5603.13호다.³⁾

쟁점물품의 경우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중량 40g~50g/m²의 부직포로서 적용한 것이라면 HSK 제 5603.12-1000호로 분류돼 3.2%의 세율이, 그렇지 않다면 HSK 제5603.12-9000호로 분류돼 8%의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번호		품명	세율 ⁴⁾	기준 ⁵⁾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상관없다)		
	1	인조필라멘트의 것		①
	11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		②
	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3.2%	③
	9000	기타	3.2%	
	12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②
	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3.2%	③
	9000	기타	8%	
	13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		②
	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3.2%	③
	9000	기타	4.8%	
	14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②
	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3.2%	③
	9000	기타	3.2%	

3) 제5603.11호와 제5603.14호의 경우 적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인조스테이플 등으로 만든 부직포가 분류되는 제5603.91호부터 제5603.94호의 경우 중량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뿐 적층 등의 추가 가공 여부는 품목분류상 영향이 없다.

4)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

품목번호		품명	세율 ⁴⁾	기준 ⁵⁾
	9	기타		①
	91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	3.2%	②
	92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	8%	
	93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	8%	
	94	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3.2%	

2. 품목분류상 제5603호 부직포의 적층에 관한 쟁점

청구인은 제5603호에서의 적층은 방직용 섬유에 다른 재료가 아닌 같은 방직용 섬유를 층층이 쌓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물품은 PP 수지의 웹을 적층해 만든 부직포이므로 HSK 제5603.12-1000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에서 두 가지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부직포의 제조과정 중 하나인 웹의 결합을 제5603호의 용어 중 괄호에서 규정한 ‘적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이러한 적층은 부직포와 다른 종류의 재료를 결합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두 겹 이상의 같은 부직포가 결합된 물품도 적층된 부직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관세율표 제56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직포의 제조과정을 I. 웹형성, II. 접착, III. 완성가공의 3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고, 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웹형성(web formation)

웹(web)을 만드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 (a) 섬유를 카딩(carding)하거나 에어레이잉(air-laying)함으로써 시트(sheet)를 형성해 만드는 방법. 이들 섬유는 평행·교차이나 아무렇게나 배열돼 있다(dry-laid공정)
- (b) 방출된 필라멘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냉각시켜서 직접 웹(web)으로 만들거나 응고·세척해 직접 습식의 웹(web)으로 만드는 방법(spun laid공정)
- (c) 섬유를 물속에서 서스펜딩(suspending)·분산시켜 이러한 결과로 생긴 슬러리(slurry)를 와이어스크린에 침전시킨 다음 물을 제거해 웹(web)을 만드는 방법(wet-laid공정)
- (d) 섬유의 제조·웹(web)의 형성과 접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수기술에 의한 방법(in situ공정)

5) ① 재질, ② 중량, ③ 침투·도포·피복·적층 가공 여부

II. 접착(bonding)

웹(web)형성 후 섬유를 웹의 층과 폭에 걸쳐서 결합하거나(연속법) 점이나 파편으로 결합한다(간헐법). 이러한 접착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 (a) 화학적 접착(chemical bonding) :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접착은 용액(solution)이나 에멀전(emulsion)으로 돼 있는 고무·검·전분·아교·플라스틱 등의 접착성 있는 결합제(adhesive binder)를 침투시키거나 가루 상태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solvent) 등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바인딩 화이버(binding fibre)도 화학적 접착에 사용될 수도 있다.
- (b) 열접착(thermal bonding) :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web)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나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 (c) 기계적 접착(mechanical bonding) :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web)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나 물 분사기로 이뤄진다. 또한 바늘의 사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스티치본딩 방식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바늘을 사용해 만든 물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
 - 필라멘트를 기본재료로 한 웹(web)
 - 바느질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웹(staple fibre web)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접착공정은 때로는 조합해 시행되기도 한다.

III. 완성가공(finishing)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塗布 : coated)·피복·적층되기도 한다.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거밍(gumming)·봉제·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

위 해설서 내용을 요약하면 I. 웹형성 단계는 부직포 제조의 기초가 되는 웹을 형성하는 4가지 방법(dry-laid 공정, spun laid 공정, wet-laid 공정, in situ 공정)에 대해, II. 접착 단계는 I 단계에서 형성된 웹을 결합시키는 3가지 방법(화학적 결합, 열접착, 기계적 접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5603호의 용어 중 괄호에서 규정한 침투·도포·피복·적층은 III. 완성가공 단계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직포의 제조과정에 비춰 볼 때 여러 겹의 웹을 접착하는 II. 단계를 거친 형태라면 제 5603호로 품목분류가 가능한 물리적 특성을 갖춘 부직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설서는 III. 단계에 대해 '완성가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III. 단계까지 거쳐야 부직포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II.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직포에 제품별로 요구되는 사양에 따라 염색, 날염, 침투, 도포 등의 추가 가공을 통해 최종 제품이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침투·도포·피복·적층은 III.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제5603호에서의 '적층'이라 함은 웹을 접착한 II. 단계의 부직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원재료를 분사판에 분사해 형성되는 부직포를 여러겹 겹쳐서 만들어지고 이는 적층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직포라는 물품의 특성 및 앞에서 살펴봤던 제조 공정상 부직포는 필연적으로 방직용 섬유로 형성한 웹을 여러 겹 접착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주장

하는 적층은 엄밀히 말해 웹의 형성 내지 접착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인이 말하는 웹의 접착 등을 제5603호의 적층이라 한다면 부직포는 웹의 접착 공정을 거칠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부직포는 제5603.12-1000호 등의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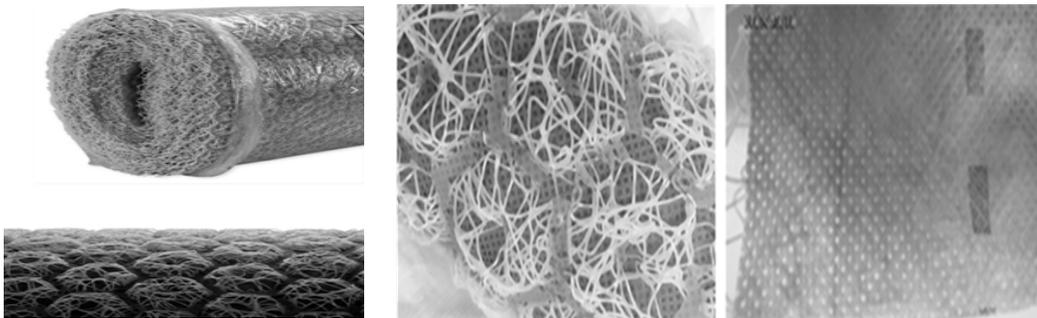
하지만 HSK는 제5603호 하위에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기타’로 분명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5603호의 ‘적층’을 III.단계에서의 적층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약하면 II.단계를 통해 만들어진 부직포에 침투·도포·피복·적층 공정만이 추가된 물품이 제5603.12-1000호 등에 분류되고 III.단계를 거치지 않은 II.단계의 부직포나 여기에 침투·도포·피복·적층을 제외한 염색·날염 등의 공정을 추가해 완성된 물품이 제5603.12-9000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직포에 같은 재료의 부직포가 결합된 물품도 제5603호에서 말하는 적층된 부직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례⁶⁾를 살펴보고자 한다.

○ 물품 개요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재질의 메쉬형 부직포와 이와 동일한 재질의 스펀본드 부직포가 겹쳐진 허니콤 모양으로 두 장의 부직포를 열로 접착해 엠보싱 형태로 가공한 시트형상의 제품(1㎡당 중량은 150g 초과)
- 주택 외부마감재 제조용으로 벽체와 외부마감재 사이에 삽입해 습기로 인한 벽체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



○ 결정 이유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202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2021.8.18.)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와 제5603호 해설서 규정은 그 취지상 부직포에 부직포 이외의 다른 재료의 물품을 결합한 경우를 전제로 해서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부직포끼리의 결합은 '적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두 장의 인조필라멘트 부직포를 결합한 것으로 그 밖의 부직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4-9000호에 분류함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부직포끼리의 결합은 제5603호의 적층으로 볼 수 없다고 봐 해당 물품을 '기타'의 부직포로 품목분류 결정했는데, 제5603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적층한 부직포를 규정하고 있는 제56류 주 제3호와 한 면이나 양면에 '방직용 섬유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sheet)'를 피복한 부직포의 경우 본질적 특성이 부직포에 있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는 제5603호에 대한 해설서 설명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제56류 주 제3호와 제5603호 해설서에서 언급된 플라스틱, 고무, 방직용 섬유직물 등은 부직포와 다른 재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 결정에 대해 제56류 주 제3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제5603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적층한 부직포를 예시한 것일 뿐 부직포에 적층한 재료를 플라스틱이나 고무만으로, 또는 부직포가 아닌 재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제5603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언급된 방직용 섬유직물, 그 밖의 다른 재료의 시트는 피복한 부직포에 관한 것이지 적층한 부직포와는 무관하다는 일견 타당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했던 제4412호의 적층 목재처럼 같은 재료를 적층한 물품을 적층한 것으로 품목분류하기도 하지만 관세율표는 호의 용어상 '적층'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도 관련 품목분류 규정 및 해설서의 취지에 따라 물품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920호의 경우 그 밖의 재료로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된다는 호의 용어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적층된 것만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적층한 것은 제3921호로 분류된다. 물론 이들은 호의 용어에서 적층 재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그리고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가 속하는 제4114호의 경우 그 용어상 적층 재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면서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플라스틱 시트 재료만을 적층 재료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설서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제4412호의 경우 합판, 베니어 패널, 적층 목재에 관한 해설서 내용에 따라 그 적층 재료가 같은 목재이기도 하고 그 밖의 재료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며, 제5910호의 경우도 호의 용어는 괄호에서 플라스틱을

적층한 것인지,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설서는 고무를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의 것은 제외된다.

호	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 설명	비고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 (그 밖의 재료로 보강·지지·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플라스틱
4114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 (해설) 두께가 0.15mm를 초과하나 전체 두께의 1/2 미만인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 를 피복한 가죽으로서 페이턴트 레더의 표면이 거울같이 광택이 나는 것	플라스틱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해설) 1. 합판 : 3개 이상의 목재 의 판을 압축 2. 베니어패널 : 목재+베니어 / 목재 이외 재료 + 베니어 3. 적층목재 : @심이 두껍고 목재 의 블록·윗가지·배트 접합 ①심이 목재의 웨이스트·석면·코르크 등 그 밖의 재료 층으로 대체	목재, 기타 재료
5910	전동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플라스틱을 적층한 것인지,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해설) 플라스틱 을 적층한 직조 합성섬유로 만든 벨트·벨팅 포함 금속 이나 가죽 의 스트립이나 실로 보강한 것도 있음 고무를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의 것은 제외	플라스틱, 금속, 기타 재료 (고무 제외)

3. 검토 의견

지금까지 적층한 부직포의 품목분류 관련 쟁점으로서 부직포의 제조 과정상 웹의 접착을 제5603호에서 말하는 ‘적층’으로 볼 수 있는지와 부직포에 부직포를 접착한 물품을 제5603호의 적층된 부직포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그리고 비록 산업계 등에서 웹의 형성이나 접착 공정에 적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직포의 물품 특성 및 HSK 체계에 비춰 볼 때 웹의 접착은 제5603호의 적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제5603호에서 규정된 적층의 용어를 침투·도포·피복의 용어와 같이 취급해 부직포가 아닌 재료가 적층된 부직포만을 제5603호의 적층된 것으로, 부직포끼리 결합된 물품은 이와 구분해 품목분류하는 것이 관세관청의 공적 견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쟁점물품은 부직포의 웹 형성과 접착 과정에서 섬유사들의 배열이 이뤄졌을 뿐 제5603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완성가공 단계의 추가적인 적층 공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층한 부직포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적층 재료와 관련해 부직포끼리의 적층을 제5603호의 적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 검토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웹의 형성·접착을 적층으로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제5603호에 규정된 침투·도포·피복·적층의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관련 주 규정이나 해설서 설명에 나타나 있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품목분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제5603호의 HSK는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을 같은 소호에 분류해 침투·도포·피복과 적층을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이를 구분해 규정하기도 한다.

다음 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22년 기준 미국 관세율표는 10단위 소호를 통해 침투·도포·피복한 것(Impregnated, coated or covered)과 기타(Other)로 구분함으로써 적층한 부직포를 기타의 부직포로 분류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세율표는 도포·피복한 것(coated or covered)과 기타(Other)로 구분함으로써 침투·적층한 부직포를 기타의 부직포로 분류함을 알 수 있다.

품목번호		품명	비고
5603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HS 6 (공통)
	1	Of man-made filaments	
	11	Weighing not more than 25g/m ²	
	11	0010	미국 (2022)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material other than or in addition to rubber, plastics, wood pulp or glass fibers	
	11	0090	Other
	11	10	EU (2022)
		Coated or covered	
	11	90	Other
	11	1	영국 (2022)
		Coated or covered	
	11	9	Other

또한 앞에서 살펴봤던 제4114호의 해설서는 **적층한(laminated)** 페이턴트 레더에 대해 ‘상거래에서는 페이턴트 **도포** 가죽(patent **coated** leather)으로도 알려져 있다. … <중략> …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를 **피복한(covered)** 가죽으로서 … <생략>’라고 설명하고 있어 호의 용어는 분명히 ‘적층’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피복’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 품목분류상 피복과 적층 가공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 경계가 크지 않아 보인다.

나아가 부직포는 제조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신소재 개발을 통해 적용 분야가 지속 확대 추세에 있어 부직포 재료를 포함해 적층되는 재료도 다양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제56류의 주 규정이나 제5603호의 해설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부직포끼리의 결합이라고 해서 적층된 부직포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결합되는 각 부직포의 제조공정, 물성, 기능 등을 종합해 동일한 범주의 재료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청구법인의 산지조사는 담보기준가격 대비 84.3%,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4.8% 수준이어서 이들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가격은 ○○○의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원물가격은 높은 반면 포장비용, 이윤 등은 현저히 낮아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번호 : 조심2021관0139(2022.7.13.)
- 청구법인 :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9.14. 및 2020.9.16. 중국 소재 AAA(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중국산 견고추 ○○○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불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견고추의 담보기준가격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20.10.5. 및 2020.11.23. ○○○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 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3.5.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15. 청구법인에게 재산정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관세법」 제16조 제1항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은 최대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품질이 하품(下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시에 거래되는 물품과 비교하여 품질에 차이가 있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품질 차이를 고려하여 거래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농산물의 특징상 수요·공급시기, 계절, 품질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크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처분이며, 처분청의 경정처분 근거는 변경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며, 적용기준을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제1방법)부터 제35조(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제1방법에 해당되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최초의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규범인 브뤼셀평가협정(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은 수입물품 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normal price)을 채택하였는데, 정상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 공개시장에서 상호 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판매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가격을 말한다.

정상가격의 개념은 관념적 가격(Notional Price)으로 동일물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일률일가 원칙에 따라 하나의 평가 대상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관념적인 가격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반면 현행 「WTO 관세평가협정」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실증적 가격(Positive Price)으로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과세하는 일률다가의 원칙이 적용되고, 「WTO 관세평가협정」 일반 서설에서는 “관세평가의 기초는 최대한 평가 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일률다가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면 과세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WCO 관세평가위원회는 권고의견 2.1에서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이 협정 제1조의 목적상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의심되고 제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여 결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장으로 결제를 진행하였고, 수출국에 방문하였거나 기타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권고의견 2.1에 위배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쟁점물품의 원가 계산서와 BBB(이하 'CCC'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을 비교하여 원물가격은 10%~26% 정도 높은 반면, 포장비·이윤이 10분의 1 정도로 낮고, 통관 관련 제반 비용도 6분의 1 정도로 현저히 낮아 이를 신뢰할 수 없어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인용하는 CCC의 산지조사가격은 2020년 9월 자료이고, 쟁점물품은 2019년산

물품으로 그 시기에 차이가 있고, 국내도매가격을 살펴보았을 때 2019년 양 건 상품의 9월 10일 평균가는 20,000원/kg이며, 2020년 양 건 상품의 9월 10일 평균가는 35,607원/kg으로 전년대비 약 78%의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품의 경우 계절 및 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한 기준년도가 서로 상이할 경우 과세가격을 위한 비교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CCC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산지가격은 톤당 미화 1,945불로 나타나고, 2020년 9월 산지가격은 미화 1,549불로 나타나는데, 쟁점물품은 2019년 생산물품으로 CCC의 2019년 자료와 비교할 경우 원물가격의 경우 쟁점물품 미화 1,870불과 산지가격 미화 1,945불로 CCC의 자료가 평균단가를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농산물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하시기에 인건비가 상승하는바, 중국의 인건비는 출하시기에 맞추어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므로 포장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쟁점물품은 2019년 물품을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으로 피크시즌에 포장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용직 고용의 기반을 둔 포장비가 아니라 월급제 고용의 인건비를 기초로 하여 포장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낮은 것이고, 이윤의 경우에도 판매시기가 지난 물품을 판매함에 따라 쟁점 수

출자는 매우 적은 이윤으로도 판매가 가능했던 것이다. 만일 이윤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을 가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WTO 관세평가협정」의 정신을 위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원가의 구성비가 다른 물품과 유사하여야 함을 전제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모든 원가구성비를 수입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매 물품에 대한 원가구성비는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입자가 수출자의 원가구성비가 진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만일 원가구성비가 수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는 일반적인 무역거래 관행상 수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원가구성비가 수입물품에 따라 모두 유사해야 한다는 것은 물품간 차이를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31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 경위를 보면 중매인을 통하여 일종의 사기거래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은 2019년 물품을 2020년에 수입하여 헛품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 저장하여 변색이 진행 중이며, 고추씨를 다량 포함하고 있고, 수분함량 또한 상대적으로 높으며, 단일 품종이 아닌 2~3가지의 품종이 섞여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건고추의 상품등급을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 쟁점물품은 하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꼭지가 달린 건고추와 꼭지가 제거된 건고추는 고추씨의 함량이 서로 다르며, 꼭지 제거 유무에 따라 유사물품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그리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가격일 등의 조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그 기간을 90일로 확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세법」 제32조가 아니라 제35조를 적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다만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現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일 2021.2.23.)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선적일 전후를 90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또한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물품과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 목록 간의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한 부분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할 경우의 사용할 수 없는 가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통지서류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처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관련 고시 조항의 임의적 확대적용 및 조정가격에 대한 고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 처분에는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를 잘못 제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처분청은 2021.3.5. ○○○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조사(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는바, 위 통지서에는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는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처분의 근거를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다.

「관세법」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처분청의 이의 신청 결정문에서 처분의 근거가 별도의 통지없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크게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의 근거를 밝혔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제33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하여 검토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명백히 구분

할 수 있는 공제요소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3호의2에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 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30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

료가 수입물품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신고한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명, 규격, 원산지, 수확연도(2019년)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가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입항일 전후 30일만 90일로 확장한 조건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그 가격은 가중평균가격 기준 톤당 미화 2,387불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026불로서 그 기간을 확장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84.87% 수준에 불과하다.

위에서 입항일 전후 90일로 확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확인한 것으로 「관세법」 제32조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조사자로 지정한 CCC의 견고추(꼭지 제거 전) 산지조사가격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산지조사가격의 80.26~9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기간 중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증명자료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물품 가격의 항목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원물비용(Material Price) 톤당 미화 〇〇〇불(93%), 내륙운임(Truck) 및 해운비(Sea Freight) 〇〇〇불(2%) 등인데 수출자의 이윤은 톤당 미화 〇〇〇불(0.7%)에 불과하다.

CCC가 조사한 신강 등 5곳의 산지조사가격을 보면, 2020년 9월경 견고추 최저가격은 톤당 미화 2,209불 내지 2,524불이고, 이중 이윤은 미화 103불~118불로 견고추가격의 4.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이윤은 CCC가 조사한 이윤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서, 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 수출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검역비용, 통관대행비, 부두사용료 등이 포함되는 수출통관비용의 경우 CCC가 조사한 가격은 톤당 미화 〇〇〇불 상당으로 수출업체 간 발생비용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계산서에는 오직 부두 이용료 미화 〇〇〇불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밖의 비용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가계산서상 기재 내역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분함유량이 고추 수분 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 수분함유량이 22~23% 수준으로 저품질로 판단되어 저렴한 수준의 가격에 거래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저품질의 근거로 제시한 수분함유량과 관련하여 해당 수분이 포함된 물품이 저품질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처분청이 분석한 유사물품의 수분함량도 18~22%여서 쟁점물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세법」 제30조는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31조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

쟁점물품의 입항일은 2020.9.10.인데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2조 또한 적용할 수 없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청구법인의 장부를 확보할 수 없거나 청구법인의 원가 내역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90일 내에 입항한 물품으로서 신고품명 ○○○, 표준품명코드 ○○○ 원산지는 '중국'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9년산이고, 고추씨가 다량 포함되었으므로 유사물품과 달리 하품이어서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건고추는 중국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수확기를 거쳐 출하되므로 9월은 햇품 출하를 기다리는 시기로서 저장품을 거래하는 시기이고,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비교한 유사물품의 생산연도는 모두 2019년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2019년에 수확한 묵은 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브로커의 사기로 인해 고추씨가 다량

포함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은 건고추의 실중량의 적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 결과 고추씨 함량은 약 26%로 확인되었고, 유사물품에 포함된 고추씨도 24~29%에 달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추씨의 함량만으로 쟁점물품이 사기를 당한 저품질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2019년 9월 및 2020년 9월의 농산물 해외수입정보-농산물유통정보 KAMIS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고추의 중국 산지가격은 2019년 9월경 톤당 미화 1,945불, 2020년 9월경 톤당 1,549불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은 톤당 미화 1,870불로서 CCC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9년 9월의 중국산지가격 자료는 2018년도에 수확한 건고추의 거래정보를 나타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CCC의 2020년 9월의 톤당 미화 1,549불은 중국 산지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감모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물가격이므로 꼭지 제거 등 감모비용을 포함하여 그 기준이 상이한 쟁점물품의 원물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CCC의 산지조사가격 중 중국 내 산지의 감모비용은 최저가격 기준으로 톤당 미화 564불부터 693불로 확인되는데, 쟁점물품의 감모비용은 원가내역서에 표기하지 않아 감모비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감모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CC의 산지조사가격 중 산지수매가격과 감모비용을 합하였을 때의 원물가격은 톤당 미화 2,094불부터 2,246불까지로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인 톤당 미화 1,870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당시 앞서 살펴본 바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산물의 과세가격 결정은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90일로 확대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과 쟁점 처분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심사결과 통지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제3방법)과 다른 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취)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 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고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

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2019년에 수확하여 꼭지를 제거한 중국 ○○○ 견고추로, 고추의 품종은 금탑이며,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달러(CIF 기준)이고, 동종물품의 담보기준가격은 톤당 미화 ○○○달러이며, 쟁점물품의 상세 규격은 ○○○과 같다.

(2) 처분청의 수입통관부서에서 2021.1.19. 의뢰하여 처분청의 분석실이 2021.1.22. 회보한 쟁점물품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쟁점물품은 꼭지가 제거된 건조 고추를 수지제 봉투에 넣어 포장한 것(내용량 약 ○○○kg)으로, 모델·규격은 Dried(A) ; Length(M) ; Equality(L)이며, 수분함량은 약 21.5%, 고추씨 함량은 약 26%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별 신고 내역은 ○○○와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는 ○○○과 같다.

(5)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Sales Contract)의 주요 내용은 ○○○과 같다.

(6)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의 주요 소명 내용은 ○○○과 같다.

(7) CCC의 '2020년 9월 수입농산물 산지가격 및 거래동향 조사보고서'에서 발췌한 2020년 9월의 원물 조사가격 및 각 가공단계별 비용은 ○○○과 같다.

(8)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 원산지, 수확연도(2019년)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2019.9.10.)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어 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그 기간만 입항일 전후 90일로 확장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이 확인한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수리내역은 ○○○과 같고,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미화 ○○○불로 확인된다.

(9) 유사물품의 수분함량 및 고추씨 비율 분석결과는 ○○○과 같고, 쟁점물품 ○○○의 고추씨 비율은 약 ○○○%이다.

(10) 처분청은 ○○○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미화 ○○○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11) 처분청은 2021.3.5. 청구법인에게 ○○○ '관세조사(심사) 결과 통보'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이 문서에 첨부된 '심사결과 요약서'에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동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최저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은 2021.6.22. 청구법인의 2021.5.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및 판단’은 ○○○과 같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임에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 대비 84.3%, 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4.8% 수준이어서 이들 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수분함량이나 고추씨 함량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CCC의 산지조사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원물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의 가격은 CCC의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원물가격은 높은 반면 포장비용, 이윤 등은 현저히 낮아 그 구성 항목의 금액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제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였으면서도 관세조사 결과 통보에서 처분근거를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한 것으로 잘못 제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 통보에 기재한 관련 법령의 조항들을 보면 「관세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35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에 앞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2021.6.22.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조사 결과 통보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용 캐리어’의 HS 품목분류

곽 재 석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I. 머리말

품목분류는 분류하는 사람의 기준이나 시각에 따라 물품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기도 한다. 물품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물품의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이 구체적이며, 품목분류 대상의 물품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접하는 다양한 물품은 호의 용어나 주의 규정에 꼭 맞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 호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형태로 볼 것인지 기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물품의 경우 C국의 관세청이 자국 내 다른 기관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한 결과가 다른 나라의 품목분류 결정과 상이해 세계관세기구(WCO) HS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된 것이다.

쟁점 사례를 통해 물품을 보는 시각에 따라 품목분류를 다르게 해석하는 과정과 HS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소개한다.

II. WCO HS 품목분류 사례

1. 논의 배경

C회원국은 자국 내 다른 기관(국제무역재판소¹⁾)이 결정한 품목분류가 다른 나라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한 결과와 상이해 WCO HS 위원회에 안건 상정요청을 했다.

1) C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제소 기업에 대한 조사와 판정을 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 물품 설명



※ 사진 출처 : Little Life 홈페이지

신체구조에 맞게 형태가 갖춰진 방직용 섬유로 만든 좌석(알루미늄 프레임에 부착돼 있음)

패드를 댄 어깨끈과 엉덩이 부분의 벨트·앵커 포인트(anchor point)·안전 장비·분리 가능한 얼굴 패드·핸들·다양한 보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물품은 아동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상태로 성인의 등에 업어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아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뒷부분 쪽으로 지퍼를 완전히 잠가서 배낭처럼 짊어질 수 있게 돼 있다.

● 제품 이미지 ●



3. 품목분류 쟁점

제4202호의 가방으로 분류할지, 제6307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할지, 제9401호의 의자로 분류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4. 관련 규정

1) 제4202호의 용어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2) HS 해설서 제4202호의 내용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紙)(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가죽(leather)’이라는 용어에는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ombination 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1호 참조).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에는 노트케이스·필기용 케이스·펜케이스(pen-case)·티켓케이스·바늘케이스·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cigar-case)·파이프 케이스·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신발 넣는 상자·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3) 제6307호의 용어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4) HS 해설서 제6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16)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Carry cots, portable cradles and similar carriers for children.)

예를 들면, 자동차 좌석 뒤에 갈고리를 단 유아용 시트는 제외한다(제9401호)

5) 제9401호의 용어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6) HS 해설서 제9401호의 내용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 라운지 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 체어(deck chair)·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의자·벤치·긴의자(couch)(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긴 의자(settee)·소파·깔개의자(ottoman)·이와 유사한 것·결상(등이 없는)[예 : 피아노용 결상·제도사용 결상·타이피스트(typist)용 결상·두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결상 스텝]·음향장치를 내장한 의자(DVD·음악 CD·MP3·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비디오게임 콘솔·비디오게임기·텔레비전·위성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이 호의 좌석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좌석과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예 : 조명 기능분만 아니라, 장난감 구성부품, 진동기능, 음악이나 음성 플레이어)를 내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팔걸이 의자·침상·긴 의자(settee) 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5. 품목분류 논의와 결정

HS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C국과 사무국이 작성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분석을 각각의 의견에 맞게 재정리해 작성해봤다.

○ 제4202호(배낭, rucksack) 분류 의견



제4202호에는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하고 있다.

HS 해설서 제4202호에서 “이 호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춘 것으로 방직용 섬유(직물제)로 제조한 제품으로 재료 측면으로 볼 때,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다.

배낭(rucksack)은 제42류 주(Notes)나 HS해설서에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배낭을 백팩(backpack)으로 정의하고 있다.

백팩은 하이커, 학생, 군인 등이 등에 메고 다니는 캔버스, 나일론 그 밖의 방수천으로 만든 가방으로 등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The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에서는 배낭을 개인 소지품이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등에 메는 가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배낭의 형상을 갖고 있다. 어깨끈과 허리끈이 있고 아동만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아기 기저귀, 음식, 장난감과 같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은 주머니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제4202호의 용어 중 ‘여행 가방이나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4202호에 분류해야 한다.

○ 제6307호(방직용 섬유제품, 유아용 운반 용구) 분류 의견



※ 자료 출처 : little life 홈페이지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된다.

C국의 국제무역재판소는 쟁점물품이 배낭이 분류되는 제4202호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쟁점물품은 외형적인 면에서 배낭과 아주 많이 비슷하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람의 등에 메고 무엇인가를 운반한다는 점이 같았기 때문이다.

C국의 국제무역재판소는 제4202호의 ‘이와 유사한 용기’라는 용어가 무생물의 물체만을 운반하는 용기 또는 가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아이를 운반하는 본 쟁점물품도 ‘이와 유사한 용기’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공구 가방, 잡낭, 냅색, 배낭’과 유사한 용기로 보고 제4202호(소호 제4202.92 호)의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주요 기능 면에서 배낭 또는 백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쟁점물품은 아동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평상시 아이의 좌석은 가방의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가 가방을 펼칠 경우 나타난다.

쟁점물품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앉는 부분을 열어야 하는 반면, 배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지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켓을 지퍼로 닫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4202호의 물품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운반하는 용기다. 즉 물건보관을 위해 지퍼로 채워진 공간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이를 신기 위해 펼쳐진 공간이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유아 캐리어는 사물이 아닌 사람을 싣도록 디자인됐기에 제4202호의 물품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제4202호에 열거된 물품들은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물건을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잠겨진다. 호의 용어 중 ‘이와 유사한 용기’도 같은 취지로서, 물건을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잠겨지는 용기를 말한다.

쟁점물품이 배낭과 같이 등에 메고 운반하는 물품이지만, 아이를 운반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진

아동용 좌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4202호에 분류되는 배낭과는 구별된다. 좌석 아래 작은 소지품을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은 품목분류에 있어 중요도는 미미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제9401호의 ‘의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제94류 주 제2호에서 가구에 대해 정의했는데,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사람의 등에 메는 제품이므로 가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9401호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HS 해설서 제6307호 항목(16)에는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제6307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비록 알루미늄제 프레임を 갖추고 있고, 일부 포켓을 갖고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은 아동을 앉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직용 섬유재료에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아동을 운반하기 위한 아동용 캐리어로서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제6307호에 분류해야 한다.

○ 제9401호(의자) 분류 의견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된다. HS 해설서 제9401호에는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아동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자에 해당되므로 제9401호에 분류해야 한다.

○ HS위원회 논의 내용 및 결과

C회원국은 쟁점물품이 제94류에서 의미하는 ‘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9401호의 의자로 분류

할 수 없다고 했다. 제94류 주 제2호에 따라 마루나 지면에 놓일 수 있도록 고안돼야 하나 쟁점물품은 외부 활동에 사용되며 등에 메기 때문이다. 등에 메달린다는 것은 아동이 일반적인 의자에 앉는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4202호의 배낭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쟁점물품이 어깨끈, 장난감, 기저귀나 음식을 넣을 수 있는 많은 주머니 갖고 있는 등 배낭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배낭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배낭은 지퍼를 열고 물건을 넣고 지퍼를 닫지만 쟁점물품은 지퍼를 열어야만 아동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4202호에는 물건을 보관 또는 운반하기 위한 용기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사람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포켓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도 이들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아니다.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동을 운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4202호에도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회원국은 쟁점물품이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에 해당되며, HS 해설서 제6307호 (16)항에서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이들과 유사한 운반 용구’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6307호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국은 위 주장에 동의하면서 제4202호는 물건을 운반하는 제품을 분류하는 호이며, 어린이를 운반하는 경우 제4202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 재료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국도 쟁점물품이 제6307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 의견을 냈다.

일부 회원국은 쟁점물품이 제4202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 4202호(소호 제4202.32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토론 중에 제9401호의 ‘의자’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하는 회원국은 없었으므로 표결은 제 4202호와 제6307호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대부분의 회원국은 쟁점물품이 제6307호의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7호)와 제6호에 따라 제 6307호(소호 제6307.90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III. 맺음말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것은 결정하려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물품의 특성은 품목분류표가 재료의 종류와 그 가공 정도 및 용도에 따라 나열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물품의 외관 형상도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품목분류표상 특정 품목군의 경우 적용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물품의 기능이나 역할도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들 요인 역시 품목분류표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쟁점물품의 외관 형상은 제4202호에 분류되는 배낭과 유사하다. 어깨에 멜 수 있도록 양쪽에 어깨끈도 있으며,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포켓도 구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형상이 일반적인 배낭 모습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주요 용도는 아동을 운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202호는 외관 형상으로 분류하는 품목코드가 아니라, ‘보관이나 운반’이라는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되는 품목번호다.

제42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가 가죽, 방직용 섬유, 종이 등 다양하다. 그리고 가공측면으로 보면 원료가 아닌 최종 제품이어야 한다.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함에 있어 쟁점은 제4202호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인데, 사람을 운반하는 제품도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다.

HS 해설서 제6307호(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서 아동(사람)을 운반하는 제품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방직용 섬유 재료)를 사용하는 제4202호에는 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제4202호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제6307호의 분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쟁점물품은 제4202호의 용어에 표현된 ‘이와 유사한 용기’로 볼 수도 있다.

쟁점물품과 같이 호의 용어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호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명확한 이해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HS 품목분류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한다.

특정 류나 호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품목분류 검토 경험이 많이 쌓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해 공식적인 품목분류 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본 글은 필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치마

김 송 미 | 중앙관세분석소

음식을 만들 때나 가사 노동에 많이 사용하는 앞치마는 주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들며,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방수 기능을 부여한 앞치마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품류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 관점으로는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방직용 섬유에 플라스틱을 결합한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는 제39류와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제품 간 필수 확인 요소가 있으므로 사례를 통해 참고하기 바란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회색계 소녀용 앞치마로 제3926.20-0000호에 신고했다.

앞치마의 원단부터 품목분류를 검토하고자 한다.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 물품’에서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 둘레에 끼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9류 주 제2호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15~30℃에서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끼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으로 쉽게 감을 수 있는 본 물품의 원단은 제5903호의 것이다.

이제 최종 제품인 앞치마의 품목분류를 검토해 보자.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114호에는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제61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앞치마’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면 직물제로 만든 앞치마가 제6211호의 ‘그 밖의 의류’로 분류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품목분류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 <전략> ... 제5903호 ... <중략> ...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제6210호와 제62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3호)로 만든 앞치마(의류)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제6210호에 우선 분류되며, 제6210.50-1000호에는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중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3호)로 만든 소녀용 의류이므로 제6210.50-100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pron	3926.20-0000 (FCN1 1.3%)	Girl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6210.50-1000 (FCN1 2.6%)



캡사이신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최근 캡사이신을 몰인 줄 알고 마신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흔히 캡사이신이 빨갱다고 생각하지만, 무색으로 몰로 오인할 수 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며,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약용과 향료로도 이용되며,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돼 있다.

캡사이신을 함유한 고추류는 식품 요리에 잘 사용되지만, 최루탄 구성성분 및 살균·살충제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고농도 캡사이신은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애리조나주 남부의 칠레 고추밭에서 칠레 고추를 먹는 동물을 관찰한 결과, 고추에게 위협이 되는 동물에게는 캡사이신이 독이 돼 이들은 고추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고추의 씨를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동물, 주로 새들에게는 맛있는 먹이가 돼 고추씨가 이들의 배설물에 섞여 멀리까지 퍼진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관세율표에서 캡사이신은 알칼로이드가 분류되는 제2939호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에 분류된다.

제2939호에는 이외에도 아편의 일종인 모르핀, 코데인, 양귀비 줄기 농축물 등과 카페인과 그 염, 니코틴과 그 염 등이 분류되고 있다.

농축되지 않은 고추 추출물 등은 관세율표 제1302호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에, 소스나 조미료 등으로 되어 있다면 제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에 분류되기도 할 것이다.

관세·무역 실무 백과사전

2022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온라인 구매 **10% 할인!**

~~120,000원~~ → 108,0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2022.3.21. 발간
상하권 전 4,940p. 상당

Point 1 2022년도 제7차 HSK 전체개정 반영

Point 2 신규 발효 FTA(인도네시아, 이스라엘, RCEP)·WTO 등
주요 무역협정세율 수록

Point 3 통합공고, 세관장 고시, 수출입 관계법령 수록

도서구매문의 Tel : 02) 3416-5112 / Fax : 02) 3442-2840

온라인구매처 커스트라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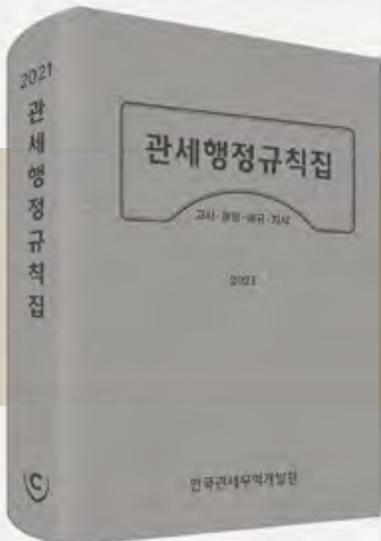
관세·무역 전문가의 필수도서

「관세행정규칙집」 전면개정 증보판

온라인 구매 **10% 할인!**

~~145,000원~~ → 130,500원 (수량 한정 선착순)

모든 관세행정규칙을 한 권에 모든 관세행정실무의 지침서.
오직 책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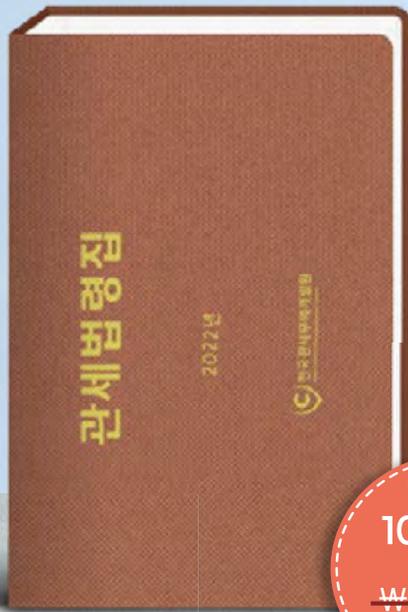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양장 4,003p.

최신 관세청 고시·훈령·예규·지시는 물론
현재 시행 중인 관세행정규칙 총 망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2 관세법령집



발간기념
10% 할인
판매가
₩ 60,000
₩ 54,000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행정법의 공통 메뉴얼

★ 구매 문의 : 02) 3416 - 5112 ★

★ 온라인 구매처 : smartstore.naver.com/kctdi ★

최신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2년 4월 11일 기준 수록



개정 이유 업데이트

22년 시행법령 개정 이유 및
주요 변경 내용 수록



가독성 높은 구성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비교 형식 배치

모든 법령을 연결하는 「행정기본법」과 그 절차를 담은 「행정절차법」을 추가
관세행정업무는 이 한 권으로!